#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87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김 윤・박해철・장종태

이재강・모경종・김성환

김남근 • 오세희 • 박희승

김선민 · 정동영 · 김남희

전종덕 • 문진석 • 민병덕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약학 정 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 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법률 제 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審議規程)"을 "(심의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건강 · 의학 · 약학 정보에 관한 사항

⑦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거짓 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처 또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	第33條(심의규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②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16</u> 의2. 건강·의학·약학 정보
	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⑦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의학・약
	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거짓 정보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부처 또는 「의료법」 제28조
	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